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1

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김경만·김병욱·강준현

박홍근 • 조오섭 • 진성준

김회재 · 한무경 · 유정주

이용선 · 양향자 · 신정훈

서영석 · 박 정 · 김영배

권칠승·이 영·김홍걸

김교흥 · 김수흥 의원

(2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 세자로 정의하며, 세금납부 부담 경감,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.

한편, 올해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라 함)'의 확산으로 소비, 경제심리 등이 크게 위축되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8조의4 신설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8,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2020년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.

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

고 있어 경제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,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건비, 원자재 구입비, 임대료, 제세공과금 등 영 세사업자의 사업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,800만원에서 8,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천800만원"을 "8천만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	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
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	
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	
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	
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	
<u>4천800만원</u> 이상 같은 금액의	8천만원
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	
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	
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	
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	
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	
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	
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	
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